

의안번호	2219672
의 퇴 인	이달희의원
회 답 일	2026.8.14.
추계번호	26D32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의 특례)	－검사는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제7항)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제8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피해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정(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

우 피해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소요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국선변호사에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반면, 일반 국선변호사의 경우 활동 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 법무부 2026년 예산안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당을 1건당 25만 8천원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로 총 50명에 대하여 49억 9,699만원으로 편성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수,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수, 국선변호사 신청 건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assembly.go.kr